

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

과제번호		
과제명		

검토 내용	해당유무
첨부파일 확인	
□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	
▶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?(해당할 경우 추가 증빙 필요 없음)	<input type="checkbox"/>
첨부파일 명 :	
□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	
▶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 되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
첨부파일 명 :	
□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여부	
▶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중복투자, 기술개발의 필요성 또는 사업화에 우려가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
첨부파일 명 :	
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	
▶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
첨부파일 명 :	
□ 참여제한 여부	
▶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?	<input type="checkbox"/>
첨부파일 명 :	
□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	
▶ 기업의 부도	<input type="checkbox"/>
▶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)	<input type="checkbox"/>
▶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)	<input type="checkbox"/>
▶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?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	<input type="checkbox"/>
▶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*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-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 -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	<input type="checkbox"/>
▶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	<input type="checkbox"/>
▶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	<input type="checkbox"/>

검토 내용	해당유무
첨부파일 확인	
첨부파일 명 :	
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, 최소 참여율 여부 등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가? ▶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)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(연구기관만 해당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하는가? ▶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)의 연구개발과제 최소 참여인건비계상률은 10%를 충족하지 못하는가? 	<input type="checkbox"/>
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·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초과 여부 등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의 경우 산업부 소관 사업의 동시수행 과제수가 사전지원제외사항에 해당 하는가? -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. 단.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* 한계기업인 중견기업의 경우 4개 ** 한계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2개 ※ "한계기업"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. 이때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'BBB'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. 	<input type="checkbox"/>
첨부파일 명 :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사항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가? (단,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「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) ▶ 과제기획에 참여한 실무작업반(공고시 첨부한 자료 참조)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가? ▶ 기타 공고문 및 사업별 안내문 상의 신청자격 상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? 	<input type="checkbox"/>

만약, 위 기재한 사실과 달리 신청기관의 행정착오, 오기입, 허위기재, 관련 서류 위·변조 등으로 인해 신청 자격 부적정 사실이 확인될 경우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」 제22조제5항에 따른 선정 취소, 제2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해약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연구개발기관명 :

연구개발기관의 장 :

(직인)

연구책임자 :

(인)

산업통상부장관(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) 귀하